

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
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
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(안 제3조)
 - 법 제22조제3항제8호 → 법 제22조제6항제8호 (안 제10조)
 - 영 제26조제11호 → 영 제26조제16호, 영 제27조제4호 → 영
제27조제1항제4호 (안 제1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, 만료되는 → 끝나는, 아니한 → 았
은, 달리 → 다르게, 합산하여 → 합하여, 아니한다 → 았는다,
순으로 → 순서로, 동일한 → 같은, 필한 → 마친

-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(안 제23조)
-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(안 제27조)
-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(안 제28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